

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 안 번 호	2704
------------	------

김현기 의원 (국민의힘, 강남구3)

- ☐ 존경하는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강남구 제3선거구 김현기 의원입니다.
- ☐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☐ 서울시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설립하여
서울시장이 지정하는 물재생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서울시
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- ☐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거 서울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, 업무 및 운영
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며, 현재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
설치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및 「서울특별
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규정을 마
련하였습니다,
- ☐ 다만,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한 서울시의

관리, 부채관리 및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과 위탁관리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이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사무로 각각 분장되어 업무추진 과정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소통이 우려되는 바입니다.

- 이에 따라, 본 의원은 「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과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.
-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‘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’, ‘중요한 재산의 취득,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’을 추가하고, 공단 ‘이사장이 예산편성, 임직원 채용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’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.
-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서남·탄천물재생센터를 관리·운영함으로써 물재생 기술개발을 고도화하고 수질관리 및 악취저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. 또한, 물재생체험관·물재생데이터·공공체육시설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며 서울시의 물재생 생태계 허브를 구현하는 주요 산하기관입니다.
- 그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,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세 주체가 상호 면밀히 사무를 검토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-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